

서울특별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63
----------	------

2023년 9월 5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3년 8월 14일

다. 회 부 일 : 2023년 8월 21일

라. 상 정 일 : 제320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년 9월 5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가.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는 취약계층 청년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사무로서, 고립·은둔청년 발굴·상담·맞춤지원·사회진출까지 원스톱 맞춤 서비스 지원, 가족 상담 및 관계망 형성 지원, 인식 개선 캠페인 운영, 취약 청년 정책연구, 척도 개발 및 실태조사 등의 추진을 위하여

나.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및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다. 고립·은둔청년 상담 및 종합적 지원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위탁사무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사무
- 위탁기간 : 2024. 3. 1 ~ 2027. 2. 28 (3년)
- 소요예산 : 2,628,010천원 ('24년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사무
 - (종합체계) 고립·은둔청년과 가족 지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지원체계) 발굴, 선별, 상담, 맞춤 프로그램 지원, 사회진출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회복청년(취업, 자립 등), 중도이탈청년 등을 위한 지속 모니터링
 - (성과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 및 효과성 분석 실시
 - (대외협력) 외부자원 연계 사업 및 인프라 활용
 - (인식개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및 긍정적 인식 제고
 - (연구개발) 고립·은둔청년 관련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교육훈련) 종사자 번아웃(소진) 방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그 밖에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의 회복 지원을 위한 사무 등
- 위탁대상 : 고립·은둔청년 전문성 및 지원 실무 경험 보유한 법인·단체·기관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민간위탁 추진계획(미래청년기획단-9855, '23.7.19.)
-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3.7.20.) 결과 : 적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동의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하 동의안)은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관련 업무를 사무형 민간위탁¹⁾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검토 의견

(1) 민간위탁 사무 개요

- 이번 동의안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 중인 사무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종합지원으로, ‘고립·은둔청년’ 발굴·선별·상담·맞춤 프로그램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 종사자 교육

1) **사무형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함

훈련 등이고 위탁기간은 '24.3월부터 '27.2월까지 3년을 위탁관리하고자 함

□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 2024년 3월 ~ 2027년 2월 (3년)
- 조직운영(안) : 센터장 1명, 부장 2명, 팀장 5명, 팀원 18명 등 총 26명 (2부 6팀)
- 사업예산(안) : 2,628백만원(24년)
- 위탁사무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사무
 - ① (종합체계) 고립·은둔청년과 가족 지원에 대한 컨트론타워 역할 수행
 - ② (지원체계) 발굴, 선별, 상담, 맞춤 프로그램 지원, 사회진출 서비스 제공
 - ③ (사후관리) 회복청년(취업, 자립 등), 중도이탈청년 등을 위한 지속 모니터링
 - ④ (성과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 및 효과성 분석 실시
 - ⑤ (대외협력) 외부자원 연계 사업 및 인프라 활용
 - ⑥ (인식개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및 긍정적 인식 제고
 - ⑦ (연구개발) 고립·은둔청년 관련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⑧ (교육훈련) 종사자 번아웃(소진) 방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⑨ 그 밖에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의 회복 지원을 위한 사무 등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지원’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형태로 최초 실시되었고 '21.12.30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매년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2023년 현재 지방보조사업(예산 15억 30백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음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2022년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²)’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3.4월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계획³)’을 수립·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기존 단년도 위주의 사업 운영(보조사업, 9개월)방식을 다년도 연속 운영이 가능한 민간위탁(3년) 방식으로 변경하여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 중장기 관점에서의 지원 및 사례·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2023년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39세 고립·은둔 청년 500백명
- 추진경위 : ‘19년 시범사업(성북) 형태 운영 후, 연도별 대상 및 프로그램 확대
- 추진체계 : 전문 민간기관 보조사업 수행
 - 생명의전화,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사)씨즈 3개 기관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 사업예산 : 1,500백만원

구분	합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비	활동비
금액	1,500,000	839,790	47,480	600,319	12,411

○ 사업 프로세스

발굴체계	복지정책,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통한 층층한 발굴 (☞ 몽땅정보통 접수)
맞춤지원	심리상담, 공동생활, 정서/관계회복, 진로교육, 부모지원 등 토털 서비스
사회진입	자립성공을 위한 실제 일 경험 및 해외봉사 기회 제공, 일자리 사업 연계
사후관리	고립·은둔의 완전 극복을 위한 지속 관리 및 멘토 (은둔고수)로서 선순환 정착

○ 사업 흐름도



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2023. 1. 19., 조사기간 : 2022. 5. ~ 12

3)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계획, 2023. 4. 21., 행정1부시장 방침 제82호

□ ‘고립·은둔청년 지원’ 민간위탁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

○ 기대효과

- 취약계층 청년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종합적 원스톱 지원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사회진출을 위한 동기 및 활력 제고(‘24년 800명 이상 지원 목표)
-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에 대한 병행 지원을 통해 가정 붕괴 방지
- 전방위적 발굴체계 운영으로 사각지대 취약 청년을 정책 및 제도 내로 유입
- 서울형 고립·은둔청년 지원체계·모델의 전국적 정책확산 및 제시

○ 성과목표

-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에 대한 전문 상담 콜센터 연중 운영
- 발굴, 선별·상담, 맞춤지원, 사회진출 서비스 제공 종합적 원스톱 지원
- 고립·은둔청년 일 경험(직무별 일 체험) 지원 및 일자리 연계
- 회복청년 및 중도이탈청년 등 3개월 이상 사후관리 지원
-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에 대한 심리정서 및 관계망 형성 교류 지원
- 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①자아회복 ②관계형성 ③취미·문화활동 ④신체활동 ⑤진로 및 취업활동 등) 기획·운영
- 은둔청년 특화 공동생활 숙소 1개소 이상 운영
- 고립·은둔 경험 극복 청년(은둔고수)과 멘토·멘티제 운영
- 고립·은둔청년 유관기관(청년기관, 청소년기관, 의료기관, 복지관, 교육기관 등)과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고립·은둔청년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 운영(연간 오프라인 3회)
- 고립·은둔청년 관련 정책연구 1회, 현황 및 실태파악 조사 1회
- 긍정적 인식 개선 캠페인 3회(온·오프라인 통합), 오프라인 행사 기획·운영 3회
- 성과관리 매월, 성과평가 2회, 성과공유회 1회, 청년주간 행사 참여 1회

(2) 민간위탁 사무 대상 여부 검토

- 현행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먼저 「청년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23.3.21일 「청년기본법」 이 개정('23.9.22. 시행)되면서 제4조제6항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음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정의하고 있고, '사회적 고립청년'은 취약계층 청년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울시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임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략)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개정, 2023. 9. 22. 시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 취약계층 청년 유형

취약계층 청년 유형			조작적 정의
인적 속성	장애 청년		등록장애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청년
	이주배경 청년		출생지가 북한 또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청년 / 다문화 가족 자녀
관계적 속성	청년부양자	경제적부양 청년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니면서 본인소득이 가구소득의 75% 이상
		한부모 청년	한부모 가정의 부모인 청년

취약계층 청년 유형			조작적 정의
		청년돌봄자	돌봄이 필요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구원을 돌보고 있는 청년
		사회적 고립 청년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 고립청년)
일자리 특성	미취업청년	니트 청년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	장기실업자 또는 비자발적 실업자
	취업청년	저임금 근로 청년	임금수준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청년
		불안한 고용 청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임시, 일용 종사자 / 1인 자영업 종사자
		열악한 고용환경 청년	주 50시간 초과 근로청년 / 단기근로 청년
경제력 수준	저소득 빈곤 청년		가구처분소득이 중위 50% 미만인 저소득 빈곤가구의 가구원
	과도한 부채부담 청년		경제력 대비 본인이 상환해야하는 부채부담이 과도한 청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취약계층 청년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2021. 12.

- 그 밖의 서울시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정책 추진 의무 등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의무를 시장에게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 자치사무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는 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청년’은 ‘고립·은둔청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이나 조례는 없으나,
- 현행 「민간위탁 조례」가 일반조례로서 민간위탁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점⁴⁾, '23.3.21일 개정된 「청년기본법」(’23.9.22. 시행)에 시·도지사가 청년정책 관련 기관에 소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된 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청년기본법」 (2023. 3. 21. 개정, 2023. 9. 22. 시행)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법안 심사 및 내부 추진중으로 파악됨 (정부입법지원센터 확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01109 ▸박영한의원 대표발의 ▸제안일 : 2023. 8. 14. ▸회부일 : 2023. 8. 21.

제12조(운영의 위탁) ** 신설

-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의 지원사업 또는 제10조제2항의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판례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 개별법률에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을 때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을 위임의 직접적 근거로 인정

※ 「정부조직법」 제6조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2005년 일본의 ‘히키코모리’⁵⁾라는 개념과 사회 현상이 한국에 소개된 이후,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립·은둔청년’이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정부⁶⁾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서울시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21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서울 청년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약 12만 명 이상이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⁷⁾’에서는 전국 청년인구의 2.4%에 해당하는 약 24만 명 이상이 사회적 고립상태로 추정되는 등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재진입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 지원의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됨

□ 2022년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내용 : 가구조사(규모 추정치 도출), 청년조사(실태 파악), 심층인터뷰
- ▶ 조사대상 : 가구조사(청년 상주 5,221가구 및 청년 6,926명) 청년조사(5,513명), 심층인터뷰(26명)
- ▶ 조사결과
 - (규모)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규모 추정치 약 4.5% (최대 12만 9천 명 추산 / 고립3.3%, 은둔1.2%)
 - (원인) 실직·취업실패 비율이 높으며, 심리적 어려움과 인관관계의 어려움도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기간) 고립·은둔 생활 기간 1~3년 가장 많으나, 5년 이상 장기 고립·은둔도 41.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5) **히키코모리** :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이나 집 등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현상 모두를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 2003년 일본언론에 소개됨.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할 수 있음

6) 보건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기간 : 2023. 7. ~ 2023. 8.

7)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주관:국무조정실, 조사기간:2022. 7. ~ 2022.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공공부문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며, 민간부문의 특수한 전문성 활용을 통한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민간위탁 도입 시에는 민간 시장의 다양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고립·은둔’이 사회적 현상이며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 역사가 짧고, ‘고립·은둔청년’이 이행기적 특성⁸⁾을 가진 ‘청년’ 중에서도 이질적이고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대상인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와 높은 상담 기술, 다양한 경험 등 전문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위탁사무가 지원 대상의 발굴부터 상담·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후관리 등 복지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능력과 실무 경험, 복지 자격을 요하는 사무라고 할 수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였을 때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와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시장의 규모가 충분한지, 몇몇 소수의 민간업체가 민간위탁 사무를 과점하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민간위탁 조례」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은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정’ 판단을 받았음

8) **청년의 이행기(移行期)적 특성** : 청년을 ‘성인으로의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 과정으로 정의. 즉, 공부를 마치고, 일자리를 찾고, 부모의 집을 떠나,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과정을 뜻함. (Schizzerotte and Lucchini 2004, Furstenberg 2002, Billari 2004, Aassve et al. 2006 재인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 ① 시장은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3. 위탁사무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 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사무형	신규	-	3년	적정	-

-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현재 1년 단위의 단기 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의 문제점인 지원 프로그램의 단기운영, 단절적 사후관리, 지원 중단에 따른 ‘고립·은둔 청년’의 재고립 현상 등을 해결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지원사업 추진체계의 구축과 정착을 도모한다는 점, 그리고 ‘고립·은둔’ 문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성과목표”를 살펴보면 주로 양적지표인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수탁기관의 실적 채우기식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를 거쳐 질적 측면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도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지속적 서비스 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임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1년 단위의 단기 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 중인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를 3년 단위의 다년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적법성과 적정성, 위탁 기간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고립·은둔청년 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의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적격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전문기관·단체·법인을 발굴하는 등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고립·은둔청년’의 사회 재진입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 소관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은 사업담당 행정조직과 인력, 업무분장 등을 세심하고 적절하게 조정하여 수탁기관이 ‘고립·은둔청년 지원’의 컨트롤 타워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행정지원과 관리·감독을 빈틈없이 해나가야 할 것임

6. 질 의 및 답변요지: 생 략

7. 토 론 요 지: 없 음

8.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9. 소 수 의 견 의 요 지: 없 음

10. 기 타 필 요 한 사 항: 없 음

서울특별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63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는 취약계층 청년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사무로서, 고립·은둔청년 발굴·상담·맞춤지원·사회진출까지 원스톱 맞춤 서비스 지원, 가족 상담 및 관계망 형성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운영, 취약 청년 정책연구, 척도 개발 및 실태조사 등의 추진을 위하여
- 나.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및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 내용)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 다. 고립·은둔청년 상담 및 종합적 지원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위탁사무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사무
- 위탁기간 : 2024. 3. 1 ~ 2027. 2. 28 (3년)
- 소요예산 : 2,628,010천원 ('24년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사무
 - ① (종합체계) 고립·은둔청년과 가족 지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② (지원체계) 발굴, 선별, 상담, 맞춤 프로그램 지원, 사회진출 서비스 제공
 - ③ (사후관리) 회복청년(취업, 자립 등), 중도이탈청년 등을 위한 지속 모니터링
 - ④ (성과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 및 효과성 분석 실시
 - ⑤ (대외협력) 외부자원 연계 사업 및 인프라 활용
 - ⑥ (인식개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및 긍정적 인식 제고
 - ⑦ (연구개발) 고립·은둔청년 관련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⑧ (교육훈련) 종사자 번아웃(소진) 방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⑨ 그 밖에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의 회복 지원을 위한 사무 등
- 위탁대상 : 고립·은둔청년 전문성 및 지원 실무 경험 보유한
법인·단체·기관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민간위탁 추진계획(미래청년기획단-9855, '23.7.19.)
-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3.7.20.) 결과 : 적정

※ 작성자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청년활력팀 김다영 (☎2133-6599)